

여성농민이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방안

고승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1. 들어가는 말

가. WTO체제 출범으로 이제 전세계는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하에 놓이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식량자급율이 현재 쌀을 제외하면 4.5%밖에 되지 않는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농산물 수출국들이 100% 전면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로 인해 타격을 받게될 주요 품목 재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제도와 국내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농업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세계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 농업 생산주체의 전문인력화가 매우 중요하다. 주제발표문에서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 가족농업에서 대규모 기업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나, 그동안 정부 주도하의 전업농 육성정책은 대다수 중소농을 정책대상에서 소외시켰고 경영능력 향상이 뒤따르지 못한 규모화, 시설현대화는 결과적으로 농민이 자생력을 갖는데 일정 한계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경영능력이 뒷받침이 된 전업농을 육성하기에는 그 대상농가가 많지 않으며, 현실적인 농업구조상 가족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규모의 영세성과 그에 따른 저생산성이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품목별 협동화가 필요하며, 농민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 가족농 구조에서 여성농민의 농업노동력 제공 및 노동력 재생산 등의 역할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주제발표문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여성농민들의 높은 경제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위나 가치평가는 인정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여성농민의 역할을 보조자 정도로 보는 가부장적인 사회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성농민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력이 주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농민의 경제적인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면서 결국 정부의 농업정책과 여성정책에서도 소외되어 왔으며,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전문교육 및 사회교육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또한 생산자조직에서도, 농가경영에서도 여성농민은 주체화되지 못하였다.

라. WTO체제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주제발표문에서 방안으로 제시한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가진다. 다만 전체 농업노동력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이 전문화된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는 식량자급 실현 및 환경보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등 농정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변화하는 농업정세에 여성농민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여성농민을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제도적 장치 마련, 경제적 지위 향상, 농업경영능력 확대, 농업생산조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2.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 방안

가. 법·제도적 장치의 확보

(1)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정시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반영하여 전문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 여성농업인 육성조항을 근거로 하여 여성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과 권한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구축 및 각종 지원제도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2) 협동조합 등 생산자 조직에 여성농민의 참여 및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협동조합개혁 논의과정에서도 여성농민의 참여나 결정권한에 대한 것은 논외로 되어있으나, 각종 농관련법인 구성요건에 여성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 여성농민 협동경영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여성농민의 경제력 확보

(1) 여성농민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밭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직접지불제는 WTO체제하에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이며, 외국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주요품목에 대해 광범위하게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 실현, 환경농업 육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보전을 위해 쌀을 포함한 주요 밭작물에 대한 가격지지 및 지원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특히 밭작물의 주요 생산주체인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실현을 위해 점차적으로 밭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확대 실시해 나아가야 한다.

(2) 여성농민 노동에 대한 적정보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농민이 참여하고 있는 작물 및 생산비 등에 대한 별도의 통계체제를 마련,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한 보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력 재생산의 일환인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가치 추정치 연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여성농민의 노동가치를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농업경영능력 확대

(1)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농민의 농업생산주체로서의 자기정체성 확보 및 농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수요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해 연령별, 품목별, 지역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육 이수후 후속 조치로서 교육 및 상담을 일상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의 이용, 영농일지 작성, 자가노동에 대한 평가 등을 여성농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 면단위의 여성농민 학습 단체를 구성, 육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도 고려해 봄야 한다.

라. 여성농민의 세력화

(1) 여성농민이 지역사회 발전의 한 주체로 세력화 되어야 한다. 농촌사회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와 환경을 보존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저급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공동체 사회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불안전한 농업소득으로 인한 농외소득 활동 증대 등 부모세대의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되면서 자녀세대와의 유대관계도 느슨해지는 등 가족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사회·문화적인 변화는 제도적인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여성 농민들이 생활근거지로부터의 의식개혁이나 공동체문화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자치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

(2) 여성농민 대중조직체인 민간단체의 실천적인 참여를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농민 대중단체는 대안세력으로서 여성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면서 정책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마을에서부터 면, 군, 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천사업을 통해 여성농민의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관 주도의 대 여성농민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농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관이 공조할 수 있는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마. 기반조성

고송자 : 여성농민이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방안 토론

(1) 여성농민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여성농민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밭농사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밭의 경지정리 및 종자파종 등의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2) 여성농민의 생산활동 지원으로서의 복지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과후 아동지도와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대안교육 등 농촌학교교육의 질적 개선, 산전산후 휴가시 및 농번기 영농 도우미제도,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의 확충 등)

3. 마치는 말

여성농민의 전문인력화는 변화하는 농업정세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여야 하고 여성농민 스스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주체로서의 자긍심과 자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